



은퇴연금 및 유가족연금

미국에서 사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거나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근로자가 은퇴하거나 장애자가 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에게 지불됩니다. 유가족 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불됩니다. 본 설명서는 은퇴연금 및 유가족 연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혜택에 관한 내용은 설명서 *Disability Benefits*를 받아 보십시오.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거나, 맹인 또는 장애가 있는 분은 생활 보조금(SSI)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에게 SSI가 지급됩니다. SSI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Benefits*를 받아 보십시오.

귀하의 근로연한

귀하께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혜택의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노동허가증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였으면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을 경우, 메디케어 연방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일을 하면서 소득에 기준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냅니다. 귀하께서 다른 고용인을 위해 일할 경우, 귀하의 고용주도 귀하를 위해 같은 액수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냅니다. 자영업을 할 경우, 귀하께서는 고용자와 고용주가 각각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둘 다 내야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귀하의 소득을 기록하기 위해 귀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합니다. 직장이 바뀐다 해도 같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귀하의 소득 기록이 유지됩니다. 귀하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근로경력을 통한 총 소득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항상 같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고 귀하의 모든 고용주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공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료로 배부하는 소셜시큐리티 명세서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받아 보시면 귀하의 소득 내용이 모두 기록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필요하면 사회보장국의 무료 전화번호 **1-800-772-1213**에 연락하십시오. 소셜시큐리티 명세서를 보시면 귀하께서 수혜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 장애혜택 및 유가족 연금의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은퇴연금 수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직장에서 10년간 근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1929년 이전에 출생했다면,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귀하의 은퇴연금액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귀하의 총 소득을 기준하여 산출됩니다. 귀하의 소득이 많을수록 수혜금액도 많아집니다.

은퇴연금은 연령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2세에 받는 수혜 액수는 정년퇴직 연령에 은퇴연금을 받는 것에 비해 적기 마련입니다. 귀하께서 1938년 이전의 출생자이면, 65세에 신청하면 은퇴연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38년 이후 출생자의 정년퇴직 연령은 67세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의 근로기록에 근거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인 또는 남편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기록에 의해 수혜가능한 자녀를 돌보고 있을 경우에는 62세가 되기 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 부인 또는 전 남편과 적어도 10년간 결혼생활을 했으면,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18세까지 또는 그들이 초등 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1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가 넘는 자녀들도 장애자일 경우는 수혜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가족 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유족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매 월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 연금의 수혜를 위해서 필요한 근로연한은 근로자의 사망시 연령에 의해 산출됩니다. 근로연한은 연소자일 경우 적게는 1년 반 정도이며 만드시 10년 이상의 근로연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부인과 사별한 분의 경우는 60세부터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 가능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자일 경우에는 50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수혜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18세까지 또는 그들이 초등 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1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가 넘는 자녀들도 장애자일 경우는 수혜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 되거나, 65세 이하의 장애자, 또는 불치의 신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건강 보험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이미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65세가 될 때 자동적으로 메디케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65세가 되기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미리 메디케어를 신청하십시오.

소셜시큐리티 혜택의 신청방법 및 시기

소셜시큐리티 혜택 신청은 어느 사회보장 민원 사무소에서나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신청 방법은 사회보장국 무료 전화번호 **1-800-772-1213**에 전화하여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만일 **통역이 필요하시면** 사회보장국에서 무료로 봉사해드립니다. 유가족 연금은 수혜 자격요건이 갖춰지는 즉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퇴직 예정 연도 이전에 사회보장국 직원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을 하기 전에 은퇴연금 신청을 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서류

소셜시큐리티 혜택 수혜 자격을 증명하거나 수혜 액수를 정산하는데 필요한 특정 서류들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신청하실 때 요구 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카드 (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기록된 서류)
- 본인의 출생증명서 (예: 호적등본)
- 자녀의 출생 증명서 (해당 자녀가 혜택을 신청할 경우)
- 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영토내 출생자가 아닐 경우, 합법적 체류신분에 대한 증빙 서류

- 배우자가 신청인의 기록에 근거한 혜택을 신청할 경우, 해당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및 소셜시큐리티 번호
- 혼인증명서 (배우자의 기록에 근거해서 신청할 경우)
- 군복무 경험자의 경우, 제대 증명서
- 가장 최근의 W-2 서류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보고서

위 목록은 신청 준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서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혜택을 신청할 때 추가 서류들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목사항: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해당 발행기관에서 공인한 사본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우편으로 또는 직접 사회보장국에 오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복사한 후 제출한 서류를 돌려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으셨더라도 소셜시큐리티 혜택 신청을 늦추지 마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귀하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인 www.ssa.gov에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행물(publications)** 및 **양식(forms)**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은퇴계획을 위한 **Retirement Planner** 및 다른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Benefits Planner**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무료 소식지인 **eNews**를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은퇴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영문으로만 제공됩니다.

또한 무료 전화 **1-800-772-1213**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응답 전화 서비스는 매일 24시간 내내 제공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TTY 전화번호 **1-800-325-0778**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락방법을 사용하던 사회보장국에서는 문의내용을 기밀로 처리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수신전화나 발신전화 내용의 일부를 다른 사회보장국 직원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Publication No. 05-10710
Retirement and Survivors Benefits (Korean)
January 2000